

## 더샵 거제디클리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문

※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래 내용은 단순 참고용이며, 관계 법령 개정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꼭!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### ■ 특별공급 청약일정 및 장소

신청 대상자	신청일자	방법	장소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	2021. 06. 08(화)	인터넷 청약 (08:00~17:30)	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앱(청약홈)

### ■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

신청 대상자	당첨자 발표	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	계약기간
일 정	2021. 06. 16(수)	2021. 06. 16(수) ~ 2021. 06. 23(수)	2021. 06. 28(월) ~ 2021. 07. 02(금)
방 법	개별조회 (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)	방문접수 (09:30~16:00) ※ 상세 일정 별도 공지	09:30~16:00
장 소	한국부동산원(특별공급 및 일반공급) '청약홈' www.applyhome.co.kr	당사 견본주택 (거제시 상동동 202-1번지)	

### 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구 분	내 용
대상자 및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제시 및 경상남도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(태아포함)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</li> <li>청약자격요건 :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(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</li> <li>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</li> <li>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이어야 하며,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.</li> <li>※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.(단,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,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.)</li> <li>※ 이혼자녀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,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, 입양한 미성년자녀(전혼자녀)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.</li> <li>※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(전혼 배우자 자녀)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.</li> <li>※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※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「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영지침」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</li> <li>소형·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</li> </ul>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급세대수 : 전체 주택형별 건설량의 10% 범위</li> <li>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,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.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</li> <li>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</li> <li>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</li> </ol> </li> </ul>

##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

구 분	다자녀가구 특별공급	계
74A	21	21
74B	5	5
84A	29	29
84B	35	35
84C	14	14
84D	16	16
98	7	7

##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

평점요소	총배점	배점기준		비 고
		기 준	점 수	
계	100			
(1) 미성년 자녀수	40	5명 이상	40	▪ 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
		4명	35	
		3명	30	
(2) 영유아 자녀수	15	3명 이상	15	▪ 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
		2명	10	
		1명	5	
(3) 세대구성	5	3세대 이상	5	▪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
		한부모 가족	5	▪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(4) 무주택 기간	20	10년 이상	20	▪ 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 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▪ 청약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(5) 당해시도 거주기간	15	10년 이상	15	▪ 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해당 지역(경상남도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-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봅니다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(6)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	5	10년 이상	5	▪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

- (1), (2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[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 
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에 한합니다.]
- (3) 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(3), (4) :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를 적용
- (4), (5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(6) 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
- ※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